

## ◆ 24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기본서 정오표. 개정내용 포함**

↳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오탈자 등은 제외

Page 28~32. 36. 44. 45

영 **별표1 위험물 명칭**(시행 '24.04.30.) **5류 지정수량 개정**(시행 '24.7.31.)

↳ 교재에 사전 수록됨

비고 3. **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측정을 하는 경우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다.

비고 19. "자기반응성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Page 72 영 **별표2 제7호 라목 (시행 '24.04.30.)**

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안에 저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age 156 (시행 '24.04.30.)

- ① 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충수·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하기 전)에 해당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합격확인증"이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9조제2항)

## Page 158 (시행 '24.04.30.)

### 3. 기술원 : 업무의 위탁 《★장 23년》

- ①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 제외 :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
- ②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 제외 :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

## Page 159 (시행 '24.04.30.)

### ◆ 기술원 업무 위탁. 탱크안전성능검사 및 완공검사

기술원. 탱크안전성능검사 《★위 22년》	기술원. 완공검사 《★위 22년》《★장 23·17년》
① 100만리터 이상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② 암반탱크저장소 : 용량 기준 없음 ③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 이중벽탱크 : 용량 기준 없음	① <b>1천배</b>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외 :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li> </ul> ② <b>1천배</b>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외 :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li> </ul> ③ 옥외탱크저장소 : 저장용량 50만 리터 이상 ④ 암반탱크저장소 : 용량 기준 없음

## Page 363 (시행 '24.04.30.)

### ◆ 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1. 안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 가. 법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갖추려는 사람 (강습교육)
  - 나. 제1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에 따라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 (강습교육)
  - 다. 제20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 실무교육)
2. 기술원 :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 실무교육)

②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 목의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가.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 나. 암반탱크
  - 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이중벽탱크)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
  - 가.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술원에 위탁 한다.

## Page 62. 표안 동식물유류 분류 변경 (테레핀유 등의 변경 사유 별도 올려져 있음)

### ◆ 동식물유류 종 인화점 낮은 물품(물질) 존재

↳ 식물의 종자(씨)나 과육(열매에서 씨를 둘러싸고 있는 살)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한정 적용

↳ 제외 : 줄기·가지·잎·껍질·뿌리·진액으로부터 추출한 것 → 인화점에 따라 석유류로 분류

- 개자유 (겨자유·갓찌유) [①46°C]

### ◆ 2석유류

↳ 식물의 줄기·가지·잎·껍질·뿌리·진액으로부터 추출한 것 → 인화점에 따라 석유류로 분류

- 테레핀유 (송정유·소나무수지·송진) [①35°C]

↳ 피네 등의 혼합물

↳ 주성분 피네 [ $C_{10}H_{16}$ ] : 2석유류 [①33°C]

- 우드테레핀유 (송근유·소나무뿌리) [①54~78°C]

- 장뇌유 (녹나무) [①47°C]

### ◆ 불건성유 종 내용 오류

↳ 잘 굳음 → 잘 굳지 않음

## Page 132. 2번째 표

### 오류. 수정

#### ◆ 채광·조명·환기·배출설비. 변경허가

1. 채광·조명·환기설비 : 변경허가를 받지 않음
2. 배출설비 : 신설에 한하여 변경허가를 받음

- ① 변경허가를 받는 제조소등

↳ 제조소

↳ 옥내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 일반취급소

- ②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제조소등

↳ 저장소 : 옥외탱크, 옥내탱크, 지하탱크, 간이탱크, 이동탱크, 암반탱크, 옥외

↳ 취급소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Page 272. 법 제19조의2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신설 ‘24. 1. 30.〉 〈시행 ‘**24. 7. 31.**〉

◆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신설 ‘24. 1. 30.〉 〈시행 ‘**24. 7. 31.**〉

-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위반 벌칙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 ‘24. 1. 30.〉 〈시행 ‘**24. 7. 31.**〉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한 자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Page 399. 법 제39조 (과태료)

〈개정 ‘24. 1. 30.〉 〈시행 ‘**24. 7. 31.**〉

법 제19조의2 신설에 따른 개정 → **상기 표** 참조하여 내용정리 요함

---

## ◆ 시행규칙 개정·시행 '24. 5. 20.' / 일부 제외

Page 67. 296.

- ◆ 위험물의 위험등급 구분 (규칙 별표 19. 운반 기준 V)

1. 위험등급 I

↳ 5류 :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1. 위험등급 I의 위험물

- 라. 제5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Page 93. 규칙 [별표 18]

- 5)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에서 주유하는 때에는 주유호스차의 호스기기 또는 주유탱크차의 주유설비를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Page 94. 규칙 [별표 18]

- 아. 이동탱크저장소(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이 경우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이동저장탱크로의 위험물 주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 14년》

Page 95. 규칙 [별표 18]

- 4)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주입하지 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4. 5. 20.'》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별표 10 IV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C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서 별표 10 IV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C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이 경우 주유장소는 「소방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방대장(이하 "소방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로 해야 하고, 해당 이동탱크저장소는 주유장소에 정차 중인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주유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다른 자동차에 주유하지 않아야 한다.

- (1)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방자동차

- (2) 긴급구조지원기관 소속의 자동차

- (3) 그 밖에 재난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소방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동차

## Page 120.

◆ 각종 신고·신청·제출의 기한 / 업무의 처리기간		
민원업무	신고·신청·제출 기한 (민원인 의무)	업무 처리기간 (공무원 의무)
사용 중지신고 <→ 하반기 개정 예정>	14일 전 : 사전 신고 <→ 7일 전>	3일
사용 재개신고 <→ 하반기 개정 예정>	14일 전 : 사전 신고 <→ 3일 전>	개정 24. 5.20.▶

## Page 121.

◆ 각종 신고·신청·제출의 기한 / 업무의 처리기간		
민원업무	신고·신청·제출 기한 (민원인 의무)	업무의 처리기간 (공무원 의무)
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 신청	• 지정받은 사항 변경 14일 이내 : 사후 신고	3일
안전관리대행기관 휴업 등 신청 〈개정 24. 5.20.〉	• 휴업·폐업·재개업 1일 전 : 사전 신고	1일

## Page 121. 제조소

더.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다만, 펌프설비 또는 1일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Page 174.

- 처리기간 : 3일 (현장 확인 후에 수리 또는 안전조치명령 여부 결정)

## Page 180.

나.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업무정지 = 과징금 無) (취소 = 청문 無)				
위반사항	근거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6) 제57조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규칙 제58조	경고 또는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7) 제57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경고 또는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8)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 Page 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소 및 청문</li> <li>◆ 사용정지 및 과징금</li> </ul>		
설치허가의 취소 : 9종 (법 제12조)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 5종 (법 제16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 8종 (규칙 제58조)
<p>경고 : 행정처분 1차, 2종 ↳변경허가 위반 :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안전조치 이행명령 위반 : 경고</p>	<p>경고 : 없음</p>	<p>경고 : 처분 1차, 3종 ↳변경신고 연간 2회 위반 : 경고 또는 업무정지 30일 ↳휴업·재개업 신고 연간 2회 위반 : 경고 또는 업무정지 30일 ↳안전관리자업무 위반 : 경고</p>
<p>취소 : 행정처분 3차, 8종 → 청문</p>	<p>취소 : 처분 3차, 2종 → 청문 ↳감경: 6개월 업무정지</p>	<p>취소 : 처분 3차, 5종 → 청문 無 ↳감경: 6개월 업무정지</p>

## Page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규칙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lt;개정 '24. 5. 20&gt;</li> </ul>	
① ② ③ ④ 기존 동일	
⑤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삭제	
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기술인력자의 연명부	
나. 변경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3. 삭제	
⑥ 안전관리대행기관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날 1일 전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하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5항제1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Page 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규칙 제5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lt;① 6. 6의2. 개정 '24. 5. 20&gt;</li> </ul>	
6. 제57조제5항에 따른 변경의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6의2. 제57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 Page 230.

2.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 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 (사전 신고)

## Page 231.

<p>4.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      5.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b>소방청장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때</b>      6. 제57조제5항에 따른  <b>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b>      7. 제57조제6항에 따른  <b>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b>      8.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b>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b></p>	<p>행정처분 3차 → 지정취소      ↳ 감경 : <b>6개월</b> 업무정지</p>
<p>● 지정취소 : 행정처분 1차 지정취소(1. 2. 3호)와 3차 지정취소(4. 5. <b>6. 7. 8호</b>)로 구분      ↳ 청문의 규정 없음      ↳ 법 제29조 청문 : <b>제조소등의 허가취소,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에 적용</b></p>	
<p>● 업무정지 : 행정처분 1차 업무정지(4. 5. <b>6. 7. 8호</b>) → 2차 업무정지(4. 5. <b>6. 7. 8호</b>) → 3차 지정취소      ↳ 과징금의 규정 없음      ↳ 법 제13조 과징금 : <b>제조소등의 사용정지처분에</b> 갈음하는 것</p>	

## Page 241.

◆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탱크시험자 비교					
구분	권한자	처리기간	수수료	변경신고	비고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  (규칙 제57조)	소방청장 ↳ 위임 無 ↳ 위탁 無	신규지정 (지정서교부) 10일  변경지정 3일  <b>휴업 등 1일</b>	규정없음	지정받은 사항 변경 14일 이내 (사후 신고)  휴업, 재개업, 폐업 <b>1일 전에</b> (사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인력 4명 이상</li> <li>정기점검 가능</li> <li>특정·준특정온외탱크 : 불가 (특정·준특정 : 액체 + 50만 ℥)</li> <li>행정처분 : 경고, 정지, 취소</li> <li>업무정지 : 과징금 無</li> <li>지정취소 : 청문 無</li> <li>지정취소 : 감경 有, 일부 無</li> <li>변경신고위반 : 과태료 無</li> <li>지정 등 : 관보 공고</li> </ul>

## Page 242.

◆ 각종 신고 비교 《★위 22·21·19·16년》《★장 20·18년》			
구 분	사용 중지·재개 (법 제11조의2제2항)	안전관리자 선임 (법 제15조제3항)	정기점검결과 제출 (법 제18조제2항)
처리기간	<b>3일</b>	즉시 (3근무시간 이내)	규정 없음

Page 243.

◆ 각종 신고 비교 《★위 22·21·19·16년》《★장 20·18년》					
구 분	탱크시험자 중요 변경 (법 제16조제3항)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변경 (규칙 제57조 제5·6항)			
신고기한	30일 이내	지정받은 사항 변경 : 14일 이내 (사후 신고)			
		휴업·폐업·재개업 : 1일 전에 (사전 신고)			
처리기간	신규등록 15일	변경 3일	신규지정 10일	변경 3일	휴업 등 1일

Page 354.

◆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개정 '24. 5. 20. 상·하위 법령 조문정리〉	
①	안전교육은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0조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 <b>실무교육</b> ”이라 한다)과 영 제2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 <b>강습교육</b> ”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b>별표 24</b> 와 같다.
③	기술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연도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을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은 매년 10월말까지 관할구역 안의 실무교육대상자 현황을 안전원에 통보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안전원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Page 356.

- ◆ 시행규칙 [별표 24] 교육시간 란의 **이내 삭제**

☆ 8장과 9장 공통 개정 → 일괄 수정 하기 바랍니다.

(개념만 알고 있으면 힘들게 수정하지 마세요. 너무 많아요)

- ◆ 방화문 〈개정 '24. 5. 20.〉

현재 교재의 내용	개정 내용
60분+방화문 (구. 갑종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 (구.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

Page 454. 458(표안).

2. 배관의 내압시험 (누설 등의 변형시험) 《★개정 '24. 5. 20.》

- 불연성 액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
- 불연성 기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1배 이상

## Page 464.

- ◆ 하이드록실아민등 《★장 23·22년》  
↳ 하이드록실아민·하이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성상 등 5류 《분류 : 1종 지정수량 10kg 위험등급 I / 2종 지정수량 100kg 위험등급 II》

## Page 521.

01 3류, 4류 및 5류 위험물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 위험물의 방유제 기준

## Page 603.

02 주유탱크차 구조 등

주유탱크차에 대하여는 IV(결합금속구 등) 및 VII(접지도선)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Page 604.

6. 주유설비에는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도선을 설치하고,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 Page 641.

⑤ 주유호스차의 호스기기에는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도선을 설치하고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Page 645.

⑤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 휘발유는 100L 이하, 4분 이하로 할 것

● 경유는 600L 이하, 12분 이하로 할 것 《개정 '24.5.20.'》

## Page 650(표안).

주유설비 (차량연료탱크)	급유설비 (용기·이동탱크)	셀프용 주유설비 (차량연료탱크)	셀프용 급유설비 (용기)
휘발유 50ℓ 이하		휘발유 100ℓ 이하	
경유 180ℓ 이하		경유 600ℓ 이하 《개정 '24.5.20.'》	
분당	분당	휘발유 4분 이하 경유 12분 이하 《개정 '24.5.20.'》	6분 이하

### Page 658.

#### ◎ 주유량 상한 및 주유시간 상한

↳ 휘발유 : 100ℓ 이하, 4분 이하

↳ 경유 : 600ℓ 이하, 12분 이하 <개정 '24.5.20.>

### Page 670. <후단 신설 '24.5.20.> <시행 '24.8.21>

- ⑤ 자동차·선박 등의 충돌에 의하여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내구성(오래 견디는 성질)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 할 것. 이 경우 보호설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산방법에 따른 충격강도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

### Page 694.

2. 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는 각각 II부터 X까지 및 X의 2부터 X의 4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례에 따를 수 있다.

### Page 695. 내용 삽입. → 뒷장 관련 내용 삭제

#### 카.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신설 '24.5.2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중 반도체 관련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 타.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신설 '24.5.2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중 이차전지 관련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 Page 698.

#### ◆ 일반취급소. 특례 15종 요건

특례 명칭	취급 위험물 및 시설 등	배수 제한	비고
반도체 제조공정 <신설 '24.5.20.>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건축물에 설치
이차전지 제조공정 <신설 '24.5.20.>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건축물 단위 허가)	건축물에 설치
		30배 미만 (실 단위 허가)	

**X의3.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1.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 · 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I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IV 제2호 · 제3호 · 제5호 · 제6호, V 제1호 다목, VI 및 X 제1호는 준용하지 않는다.
  -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벽 · 기둥 · 바닥 · 보 · 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 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을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고,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가연성의 증기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 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 라.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위험물 취급 설비의 주위에 턱 또는 도랑을 설치하는 등 해당 설비에서 누설된 액체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마.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를 공조설비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공조설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신설 '24.5.20.'> <시행 '25.5.21.'>
  -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배관의 재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 고밀도폴리 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
      - 나) 불소수지 중 과불화알콕시 알케인(Perfluoroalkoxy alkane)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갖는 불소 중합체
    - 2)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3)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것
    - 4)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I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I · II · IV · V 제1호다목 · VI · VII 및 X 제1호가목은 준용하지 않는다.
  - 가.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는 벽 · 기둥 · 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지하층 외의 층에 설치할 것
  - 나. 건축물 중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 · 기둥 · 바닥 · 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말한다)을 내화구조로 할 것
  - 다. 건축물 중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은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고,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 60분방화문(화재로 인한 연기 · 불꽃 · 열 등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되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할 것
  - 라. 건축물 중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위험물 취급설비의 주위에 턱 또는 도랑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 취급설비에서 누설된 액체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사 및 집유설비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마.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를 공조설비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공조설비는 제1호마목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신설 '24.5.20.'> <시행 '25.5.21.'>
  -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제1호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X의4.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1.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 · 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I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IV 제2호 · 제3호 · 제5호 · 제6호, V 제1호다목, VI 및 X 제1호는 준용하지 않는다.
  -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벽 · 기둥 · 바닥 · 보 · 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 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고,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가연성의 증기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 라.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에 경사 및 집유설비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설비의 주위에 턱 또는 도랑을 설치하는 등 해당 설비에서 누설된 액체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마.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를 공조설비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공조설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2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가 정하는 기준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신설 '24.5.20.> <시행 '25.5.21.>**
  -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배관의 재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 고밀도폴리 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
      - 나) 불소수지 중 과불화알콕시 알케인(Perfluoroalkoxy alkane)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갖는 불소 중합체
    - 2)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3)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것
    - 4)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위치 · 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I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I · II · IV · V 제1호다목 · VI · VII 및 X 제1호는 준용하지 않는다.
    - 가.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는 벽 · 기둥 · 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지하층 외의 층에 설치할 것
    - 나. 건축물 중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 · 기둥 · 바닥 · 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말한다)을 내화구조로 할 것
    - 다. 건축물 중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은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고,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화재로 인한 연기 · 불꽃 · 열 등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되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할 것
    - 라. 건축물 중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위험물 취급설비의 주위에 턱 또는 도랑을 설치하는 등 해당 설비에서 누설된 액체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사 및 집유설비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마.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를 공조설비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공조설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2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가 정하는 기준 또는 제1호마목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신설 '24.5.20.> <시행 '25.5.21.>**
    -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제1호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Page 761. 비고란의 6호, 7호 삭제 하세요

<6호. 신설 '24.5.20.><시행 '25.5.21.>

6. 별표 16 I 제2호카목에 따른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의  
방사범위 내에 있는 위험물 취급설비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소화장치가 내장** 또는 **부착**된 경우 해당 방사범위는 **제1호**에 따른 소화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 24년 ~ . 법령 개정 예정

- **제조소등 흡연 금지** : 법 제19조의2

⇒ **'24. 7. 31. 시행**

⇒ 시행령·규칙 하반기 개정

- **사용 중지/재개 신고일 완화** : 법 제11조의2

⇒ **'24. 하반기**

- **정기점검 대상 확대** : 법 제18조

⇒ **'24. 하반기**

- **위험물 안전협회 설립 근거 마련**

⇒ 신설 '24. 2. 20. ⇒ **시행 '25. 2. 21.**

- **위험물시설 점검업 도입**

⇒ **'26년 시행 예정**

\*3천배 이상 : 제조소, 이송·일반·주유취급소, 옥외탱크저장소